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. 10. 7.(월)

비만치료제, 비만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

- 체질량지수(BMI) 30kg/m^2 이상 고도비만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
- 의료전문가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세계 유명인사들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-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*와 관련해, **비만에 해당되는 환자**의 경우에만 **의료 전문가의 처방**에 따라 **허가된 용법대로** 신중하게 **사용**해야 한다고 밝혔다.

* (GLP-1 계열 비만치료제)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, 글루카곤 분비 저해,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(GLP-1) 성분 치료제

10월 중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**❶초기 체질량지수(BMI)* 30kg/m^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** 또는 **❷BMI가 27kg/m^2 이상 30kg/m^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**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**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.

* 체질량지수(BMI) = 몸무게(kg) / (신장(m))^2

** 이상혈당증(당뇨병 전단계 또는 제2형 당뇨병), 고혈압, 이상지질혈증 등

해당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**사용**하여도 **두통, 구토, 설사, 변비, 담석증, 모발손실,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**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, **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, 급성 췌장염, 당뇨병(제2형) 환자에서의 저혈당·망막병증 등**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**신중히 투여**해야 한다.

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**처방 후 약사의 조제·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**이며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**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,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** 당부하였다.

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**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**를 **지속적으로 모니터링**할 예정이며,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.

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*해 왔으며, 올해도 ▲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▲**올바른 투여방법** ▲**보관 및 폐기방법** ▲투여시 **주의사항** ▲**이상반응(부작용)** 보고방법 등을 담은 **안내문(리플릿)**을 **제작·배포**할 예정이다.

* 안전사용 리플릿 배포('19.4월, '23.12월, '24.10월(예정))

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	책임자	과 장	안광수 (043-719-3651)
		담당자	연구관	김영림 (043-719-3660)
		담당자	사무관	성윤선 (043-719-3664)

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10년 지켜온 국민안심, 100년 넘어갈 안심기준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